

2026.8월 경화여고 학교급식용 부식품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알림마당⇒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경화여고 행정실 ☎(053)235-7561, FAX 625-865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물품명 : **2026.8월 경화여고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입**
- 나. 품명 및 수량 : 붙임 2026.8월 학교급식 부식품 현품설명서 참조
- 다. 납품기간 : **2026.8.11. ~ 2026.8.31.(14일)**
- 라. 납품장소 : 경화여고 급식실
- 마. 납품방법 및 검수시간 :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오전 8시 15분**) 기타사항은 붙임의 부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 바. 기초금액 : **28,710,410원(금이천팔백칠십일만사백일십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후 학사일정 변경 및 학교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입찰입니다.
-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7월 20일(월) 17:00 ~ 2026년 7월 24일(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24일(금) 11:00, 경화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령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각종법규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령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소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영업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 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중이 아닌 자
- 아. 조달청의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품설명** :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경화여고 급식실(☎053-235-7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귀속

-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5.)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을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바.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별지1]계약이행통합서약서(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변동 있을시 변경계약해야함**)
-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마.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기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화여고 행정실(☎235-7561)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경화여고 급식실(☎235-7610)

붙임 1.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부.

2. 부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경 화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별지 1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8월 경화여고 부식품 구입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계약종류	소액수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5%)	원	하자보증금을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의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table border="1"> <tr> <th>항목</th> <th>수집·이용 목적</th> <th>보유·이용기간</th> </tr> <tr> <td>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td> <td>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td> <td>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td> </tr> </table>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예 [] 아니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보증서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불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예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9. 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위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요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요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상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요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요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요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요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요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에 [✓] 아니요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위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위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위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에 [] 아니요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부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학교급식용)

제1조(납품식품의 평가)납품식품의 평가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제2조(납품시간, 품목 및 수량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식재료를 학교급식이 있는 날 경화여고 08:15 납품장소에 불임 『학교급식식재료 구매물품 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 및 수량은 불임 『일일학교급식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검수 및 반품) ① 납품 품목 검수 장소는 납품장소내 검수자(영양사, 학교관계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받아야 한다.

② 납품 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반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종의 새로운 제품을 반품된 때부터 1시간 이내에 납품·검수를 받아야 한다.

1. 불임 『학교급식식재료 구매물품 규격서』에 미달될 경우
2. 식품의 신선도, 건조도, 색깔, 냄새 등이 식품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
3.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조년월일, 제조업자명, 원산지표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5. 냉장식품(육·어패류 5℃이하, 전처리 채소류 10℃이하)과 냉동식품(-18℃유지)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6. 포장에 파손되었을 경우
7. 식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냉장·냉동탑차 등)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식품감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교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4조 (납품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해한 식품
2.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3. 제조·가공·저장·운반과정에서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식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 식품
4. 식품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5. 변질된 식품
6. 병사한 동물의 육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육류가공품
7. 불임 『학교급식식재료 구매물품 규격서』 및 식품감별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허위로 가장한 식품

② 제①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식품을 납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이 경우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납품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학교급식식재료 공급시설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학교급식식재료 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부식보관용 냉장고(내부면적 3.3㎡ 이상)
2. 부식보관용 냉동고(내부면적 3.3㎡ 이상)
3. 배송용 냉동·냉동탑차
4. 부식보관용 창고(내부면적 13.2㎡ 이상)
5. 사무실 및 작업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청결상태 유지
2. 부식보관용 냉장·냉동고, 부식보관용 창고, 사무실 및 작업실 등에 대한 정기 소독실시
3. 냉장·냉동고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4. 배송과정(배송용 차량)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5. 부식창고의 적정한 온·습도 유지(온·습도계를 부착하여 온·습도 측정이 가능할 것)
6. 기타 위생 및 청결상태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의 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소유(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소유(배송용 차량은 공동소유 대상에서 제외)임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건강진단 등) ① 납품용 식품구매자 및 배송담당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시설 위생점검)계약상대자는 학교관리자의 비정기적인 시설위생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경고할 수 있다.

1. 납품한 품목의 량이 미달된 경우(제2조제1항의 시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보충한 경우 포함)
2. 제2조제1항과 제3조제2항 본문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3조제1항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1회 이상, 주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5.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도 정상운행 또는 작동하지 않을 경우
6.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7.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8.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9.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온·습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 시 비협조적으로 응하여 위생점검이 곤란한 경우
13. 본교 학교급식관계자의 정당한 납품업무 협조요청에 불응한 경우
14. 식품 검수업무 등 기타 학교급식업무 추진에 불친절, 불성실한 경우
15.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1. 물품이 납품되지 아니한 경우 및 납품이 지연된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품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제3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1품목 이상 납품한 경우
4.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제8조 각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9. 계약당자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사고(식중독 등 질병, 비정상적인 식품납품으로 인한 사고 등)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0.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11. IP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12.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본 계약건만 해당)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 업자로 제재 중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경화여자고등학교회계에 귀속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경화여자고등학교회계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납품 참가자격에 제한을 해도 납품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학교급식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등)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11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기타)본 계약서의 물품구매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일일 학교급식내역서, 학교급식식재료 구매 물품규격서 및 입찰·학교급식관련 설명사항에 의한다.